
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① ~ ③ (생략)	제12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<u>정하는 자</u> 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<u>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동물등록대행자”라 한다).</u> ----- ----- ----- -----
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·절차, <u>변경신고 절차</u>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,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	⑤ ----- ----- <u>변경신고 절차,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13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~ ③ (생략)	제13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<u>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u>
제24조(동물실험의 금지 등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동물종(種)의 건강,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24조(동물실험의 금지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<u>사역(使役)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</u>	2. ----- ----- ----- <u>봉사하고 있거나 봉사</u> ----- ----- -----

<p>제32조(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) ①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·고양이·토끼 등 가</u> <u>정에서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</u> <u>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</u> <u>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</u> <u>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	<p>제32조(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) ① <u>반려동물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8. (생략)</p>	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의2(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제32조에 따라 가</u> <u>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</u> <u>묘시설(이하 “공설 동물장묘시설”이라 한다)을</u> <u>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3조의2(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----- <u>반려동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6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영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</u></p>	<p>제36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6. (생략)</p>	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7.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</u> <u>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	<p><u>7.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(등록·변</u> <u>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</u> <u>함한다) 고지에 관한 사항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8.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</u> <u>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
<p><신 설></p>	<p>② <u>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</u> <u>(이하 “동물판매업자”라 한다)는 영업자를 제외한</u> <u>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</u> <u>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</u> <u>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③ <u>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</u> <u>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</u> <u>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p>

<p>제41조의2(포상금) ①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<p>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46조(벌칙) ① <u>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</u>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제46조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_____ _____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1. <u>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2. <u>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</u></p>
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② _____ _____ _____ _____.</p>
<p>1. <u>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</p>	<p>1. <u>제8조제2항 또는 제3항</u>을 _____ _____</p>
<p>1의2. ~ 3. (생략)</p>	<p>1의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④ _____ _____ _____.</p>
<p>1. <u>제8조제5항제1호</u>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을 판매·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</p>	<p>1. <u>제8조제4항</u>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</p>

<p>2.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·선전한 자</p>	<p>2.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·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</p>
<p>3.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·시합·복권·오락·유희·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</p>	<p>3.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·선전한 자</p>
<p>4.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</p>	<p>4.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·시합·복권·오락·유희·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</p>
<p>5.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</p>	<p>5.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</p>
<p><신 설></p>	<p>6.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	<p>제47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들</p>	<p><삭 제></p>
<p>2. ~ 2의5. (생략)</p>	<p>2. ~ 2의5. (현행과 같음)</p>
<p>2의6.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들</p>	<p>2의6.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</p>
<p><신 설></p>	<p>2의7.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들</p>
<p>3. ~ 5. (생략)</p>	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~ ④ (생략)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